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67
----------	------

2022년 2월 14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21일, 양민규 의원

2.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민규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제외되어 있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복지 확

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자녀 및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함(안 제7조제2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067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주민 자녀를 사업대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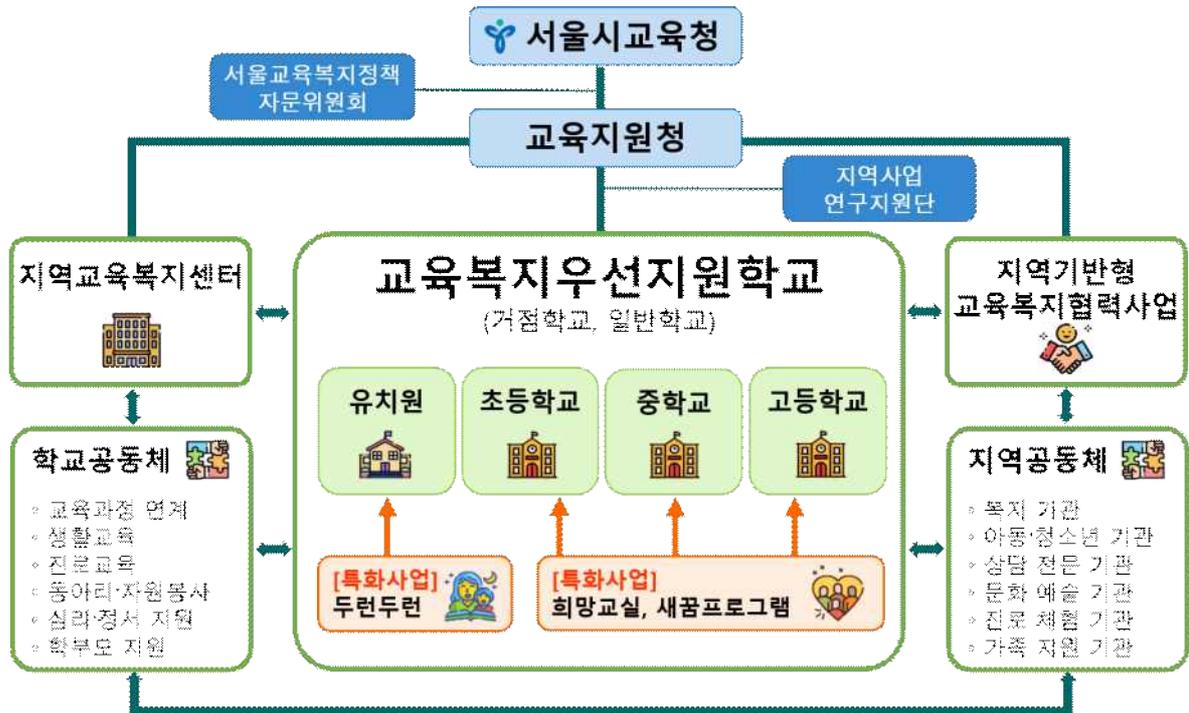
2.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에 외국인주민의 자녀 및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을 포함하도록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¹⁾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²⁾, 서울희망교실³⁾, 두런두런⁴⁾ 등의 다양한 교육복

1) 저소득층 학생(유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유치원)로서 법정저소득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거점학교(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와 일반학교(전문인력 미배치)로 구분함

지 정책을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체계



○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대상학생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확충이라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7조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⁵⁾

- 2)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와 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고 학습, 진로, 정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자 욕구에 맞추어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교육복지 사업
- 3) 교육취약 학생 4~10명에게 교원이 멘토가 되어 학습, 문화, 진로, 정서, 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력 향상을 돕는 서울형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
- 4) 교육취약 유아(만3세~5세)의 가정환경과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두두쌤(두런두런 자원활동가)와 대상 유아의 맞춤형 1:1 그림책 활동 프로그램
- 5) 제3조(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에 따른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결과 법정저소득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만이 동 사업의 대상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표-1] 2021년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

(기준: 2021.4.1. 단위: 명)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계	참고 2020년(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2021년	11,647	1,697	6,024	19,368	18,301

-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의 자녀 또는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은 동 조례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다문화학생의 범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고⁶⁾,

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매뉴얼’에서도 각 사업에 따른 대상자를 교육취약학생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⁷⁾ 교육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의 자녀도 사실상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이들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사업에 관련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추가적 재원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의 자녀 및 기타 대상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에서는 사업대상학생을 외국인주민의 자녀와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교육상 지원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7)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1.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대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저소득가정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 차차상위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추천 학생 ■ 그외 교육취약 학생: 다문화정 북한이탈주민 위기 및 결손가정 부적응 등의 사유로 추천 학생 |
|---------------------------------------------------------------------------------------------------------------------------------------------------------------------------------------------------------------------|

2. 서울희망교실 운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인이 교육취약 학생(최소 50% 이상) 포함 4~10명 학생과 결연 ※ 교육취약: 경제취약(저소득), 문화취약(다문화·탈북), 적응취약(정서·학습 등) |
|-------------------------------------------------------------------------------------------------------------------------------------------------------|

이 필요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사업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외국인주민을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02).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67
----------	------------

제안연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사업대상을 외국인주민의 자녀로 규정할 경우 교육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주민의 자녀 중에서도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대상학생) 사업 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 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다.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현 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 음)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개 정안과 같음)
<u><신 설></u>	② <u>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외국인주민의 자 녀나 그 밖에 교육상 지 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u>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u>기타 교육상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u>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대상학생) 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다.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u>